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1-96
----------	-------

제출년월일 : 2011. 1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공통의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1) 공공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에 필요로 하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

나. 시설의 설치(안 제2조)

- 1)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및 그 주요기능은 구청장이 고시.

다. 관리·운영의 위탁 등(안 제4조)

- 1)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시설관리만 위탁할 경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음.

라. 수탁자의 선정(안 제5조)

- 1) 수탁자선정은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며, 수탁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함.
- 2) 시설의 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

마. 운영지원(안 제7조)

- 1) 수탁자에게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음.

바. 지도·감독(안 제8조)

- 1)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검사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3. 조 례 안 : 따로붙임

4. 예산조치 : 관련 예산 편성

5.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2011.10.20~11.9) 결과, 특이사항 없음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1.11.15)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및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필요로 하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설치 등)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및 그 주요기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고시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관리·운영의 위탁대상시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관 및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등(사회복지관련 시설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시설관리만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수탁자는 서면으로 구청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자의 선정) ① 구청장은 시설의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사회복지 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및 제23조에 따른다.

② 수탁자선정위원회는 수탁자 선정 시 마다 구성하며, 그 위원중 수탁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수탁자가 해당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재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으로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운영위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타기관이나 개인에게 위임하여 운영할 수 없다.

제7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수탁자에게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 청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10조(시설관리 등) 구청장은 수탁자가 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관계의 취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원상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위탁중인 사회복지시설은 그 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